

농 식품 재정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중심으로 -

2023. 3.

농림축산식품부
박 유 천

[훈 련 개 요]

□ 훈련과정 : 국내대학원 석사학위(야간)

□ 훈련과제 : 농식품 재정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훈련기관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훈련기간 : 2021. 3. ~ 2023. 2.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구 성	4
제2장 보조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검색	6
제1절 농식품 보조사업 및 관리 현황	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3장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 주요 요인 개선 방향	17
제1절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요인 및 개선 방향	17
제2절 보조금 비효율집행 주요 요인 및 개선 방향 ...	33
제4장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 최소화를 위한 개선 제안	48
제1절 보조금 관리 제도개선 제안	48
제2절 보조금 관리 인프라 구축 제안	53
[부록] 보조사업 위험도 평가표(안)	5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농식품분야 국고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행정력은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해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관리시스템 구축(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기재부에 관리 조직 신설(보조금관리위원회(비상설), 국고보조금관리단, 한국재정정보원), 부정수급시 제재 강화(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등의 수단을 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처의 담당부서나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충원이나 관리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농식품분야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8조 6,694억원이며, 이는 농식품분야 전체 예산의 50%에 달한다. 반면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1명당 보조사업수와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60%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담당인력 1명당 보조사업수와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인력의 역량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일부는 농업 및 농관련 산업의 진흥과 선도 분야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이고, 일부는 산업·도시 분야에 비해 경쟁력과 소득이 낮은 농업·농촌 부분을 보완해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조금은 일종의 생계나 농업경영·생활 유지와도 관련되는데, 보조금의 불합리한 집행으로 최종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면 농업인의 삶의 기본적인 질이 나빠질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농업부분에서 생산되는 공익적 기능의 일부를 보상해주고 농촌을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재정사업도 있는데,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비효율적 집행으로 최종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투입되는 보조금의 비율이 낮으면 교부된 보조금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공익적 가치 생산이 감소하여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농식품분야 보조금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보조금 확보는 물론 확보된 보조금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집행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의 확보에 투입하는 관심과 노력 대비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투입되는 관심과 노력은 미미하다고 할수 있다. 각 부처나 지자체의 예산 총괄부서와 전담자는 많은 반면, 보조금 집행관리 총괄 담당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부분 예산부서의 결산팀에서 일부 업무로 이루어 지고 있을 뿐, 전담팀이나 전담자는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농식품부는 보조금을 총괄하는 전담팀이 있어서 보조사업 점검, 부정수급의 관리,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의 조치, 보조사업 사업지침서 등 정보의 통합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보조금 관리의 강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총괄하고 취합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등 실효적으로 수행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에도 보조사업 예산과 사업수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감사 등의 업무가 강화되어 부대업무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사업의 추진과 집행관리업무인 사업 설계 및 지침서 작성, 중간점검, 현장점검, 완료 및 정상 검증, 문제점 개선에는 역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의 60%이상을 수행하는 지자체 역시 담당자 1인당 사업수 증가, 민원 및 행정감사 등의 강화로 집행관리 업무가 늘어난 반면, 담당하는 인력의 보직연속근무기간 감소, 신규직원 비율 증가 등으로 관리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의 등록률과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당초 모든 보조금의 흐름과 적정 집행성을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 정보공개 등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하위보조사업자까지 등록하고 정산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등록 및 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사실상 최하위보조사업자까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보조사업의 경우 최하위 보조사업자가 농업인이나 영세한 영농조합법인이 많아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용이 이 어렵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대신 등록하고 입력해주는 것도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사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상당 부분의 사업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적격여부 검증에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이후 보조금의 집행에는 활용도가 떨어져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시스템을 통한 관리는 불완전한 상황이다.

현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하에서도 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 가는 시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보조금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적용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농식품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의 주요 요인과 제시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부정수급과 비효율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조사업 집행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역량강화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보조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검색

제1절 농식품 보조사업 및 관리 현황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16년 6조 8,199억원에서 2023년에는 8조 6,694억원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2-1>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민간 보조	24,580	27,661	30,246	32,419	33,615
지자체 보조	43,619	48,874	50,358	48,483	53,080
보조사업 소계	68,199	76,535	80,604	80,902	86,694
농식품부 전체예산	146,596	157,743	162,856	168,767	173,573

2023년 농식품 보조금 규모는 8조 6,694억원이며 농식품 전체 예산 (17조 3,573억원)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별로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가 5조 3,080억원(61.2%), 민간을 통한 보조가 3조 3,615억원(38.7%)로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는 보조금의 비중이 높다

<표 2-2> '23년 농식품 보조금 기본 현황

구 분	경상보조	자본보조	계
민간	2조 3,098억원(26.6%)	1조 517억원(12.1%)	3조 3,615억원(38.7%)
지자체	3조 5,653억원(41.1%)	1조 7,427억원(20.1%)	5조 3,080억원(61.2%)
계	5조 8,751억원(67.8%)	2조 7,944억원(32.2%)	8조 6,694억원(100%)

* 사업수 : 527개(민간경상 289개, 민간자본 27, 지자체경상 102, 지자체자본 109)

보조사업 관리는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보조사업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1인당 사업수가 적정해야 한다.

농식품부 1인당 담당사업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1인당 평균 3.0개, 411억원의 보조사업을 담당하던 것이 2023년에는 평균 3.3개, 549억원으로 증가(보조사업수 10%, 예산액 33%) 하였다.

- 담당 업무 증가(사업수, 예산/인) : ('19) 3.0개, 411억원 → ('23) 3.3, 549(증10%, 33%)

국비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시·군) 1인당 담당사업수 증가 및 전문성·경력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호외, 2021,)

지자체는 5년전과 비교하여 1인당 담당사업수 증가(9.7개 → 10.9), 연속근무년수 감소(2.6년 → 2.3), 신규담당자(3년이하) 비율 증가(21.1% → 25.2) 등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사업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구축('17년)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에 최하위 보조사업자까지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정보공시, 부정수급모니터링 등 관리를 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종보조사업자(농업인, 법인 등) 등록을 생략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적으로 관리된다고는 볼수 없다.

또한 보조금의 지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재정정보원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보조금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출되어야 하나(예치형), 일부 사업은 보조사업자 계좌로 지급된 후 다시 보조사업시행자(계약업체 등)에게 지급하여(비예치형) 보조금의 흐름파악과 지출 적정성 관리 곤란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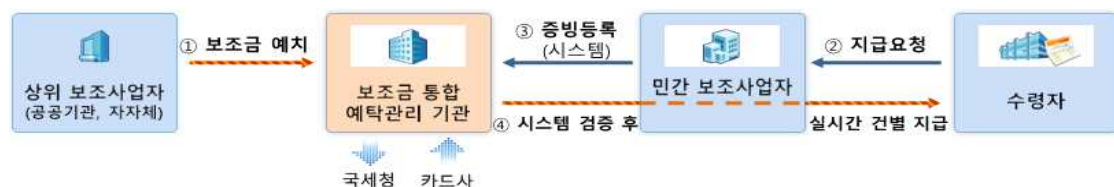
기재부의 예치형 원칙에 따라 예치형 사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액 기준 '22년 52%→'23년 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사유로 비예치형과 혼합형 사업이 상당부분 있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등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표 2-3> '22, '23년 내역사업 예치형, 비예치형 사업 현황

유 형	사업 수		예산(억원)		비율(%)		비 고
	'22	'23	'22	'23	'22	'23	
예 치 형	460	487	41,636	5,3159	52.1	61.8	* 23년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 재정정보원 가상계좌를 통하여 지출
비 예 치 형	28	4	37,124	1,235	46.5	1.4	IT 취약 집행방식특이, 지자체 수행 등
혼 합 형	18	38	1,099	31,572	1.4	36.7	일부 비예치, 일부 예치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회계관리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 IT에 취약한 농업경영체에게 지출되는 보조금이 많아 비예치형, 혼합형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 그림 2-1 > e나라도움 상 보조금 집행흐름도



보조사업 집행 점검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예산 금액,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발생 건수, 부정수급 발생 우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중점검, 정기점검,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점검은 범부처합동으로 부정수급 고위험사업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매년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반기별 사업부서와 총괄부서(혁신행정담당관실)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 점검은) 사업국별로 보조사업 점검반을 구성하여 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100억원 이상이며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상시 점검은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가 있거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 징후 목록을 제공 받아 서류점검 및 현장 점검을 한다.

부정징후는 탐지패턴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되는데, 주로 가족 간 거래, 이중 취업자 인건비 지급, 지출증빙 미비 등이 부정의심지출로 많이 추출된다.

상시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통한 적발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임 위와 같은 행정을 통한 보조사업 점검은 대부분 점검자와 사업담당자가 동일하며, 1일 2~3곳을 방문하여 서류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569건, 36.3억원임이며 이는 전체보조금의 0.00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보다는 부정수급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환수해야 하는데,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재판중인 것(15억원)을 제외하면 88% 수준 (포함 시 46%)

<표 2-4> 최근 5년간 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2018~2022)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적발	환수	적발	환수	적발	환수	적발	환수	적발	환수	적발	환수
건 수	569	447	35	29	147	135	62	48	178	134	147	101
금 액	3,631	1,680	260	250	895	741	238	86	1,847	278	391	325

적발된 건은 대부분 감사, 수사, 신고 등에 이루어진 것이며 행정 점검 적발은 소수로 행정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최근의 연구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환경농업연구원이 수행한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외, 2020)에서 외국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정연구자, 농업분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과 비효율집행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정도는 전체 보조금의 5%내외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비효율적 집행으로 보조금이 최종보조사업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20%내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수급의 주요 요인은 첫째, 보조되는 시설이나 장비·물품의 가격이나 규격·물량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아, 보조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을 시행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공모사업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관이나 심의위원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보조사업자와 업체가 공모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보다 과다하게 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는 것이다.

넷째,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자격을 충족한 것처럼 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다섯째, 관리감독의 미흡이다.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보조사업 현장 점검,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조금 비효율집행의 요인으로는

첫째,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면 보조대상이 되는 농기계, 자재, 시설 등의 가격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시중 거래가격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조율이 낮을 경우 보조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구매력이 올라가므로 업체들이 가격을 높게 부르거나, 보조사업 외의 부대 서비스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장비·물품은 대체적으로 시중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보조사업 대상 물품으로 선정되면 판매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데 대한 원인파악과 개선이 중요해 보인다.

둘째, 지원 품목이나 규격이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침에서 정해 놓아 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지침을 지킬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규격의 시설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양의 장비·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셋째,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정보를 구하거나 자문을 구할 데가 없고, 보조사업을 완료 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전문인력이나 인프라가 없어 사후 지원·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대행료, 수수료가 과다하여 최종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 밖에 사전검증 시스템 미비로 부적합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별 부정수급 위험도를 평가 및 위험도에 따라 관리를 차등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둘째,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를 효율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보조사업 지원 대상인 농기자재 가격의 표준 지표를 설정하여 보조사업시 가격상승을 예방하고, 공동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정보를 알려주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술·경영에 관하여 지도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섯째,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일곱째,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점검,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보조금의 60%이상을 집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관리 역량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보조금 관리 체계나 역량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담당인력의 관리사업수와 민원 업무가 늘어나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1인당 관리 사업수 증가*, 연간 처리 민원업무 증가** 등으로 보조 사업 담당자의 업무 증가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정밀도 저하

* 1인당 담당 사업수: 97 개 → 109 / 민원처리건수 : 103.2건 → 128.3

- ② 담당자들의 보직기간 단축, 신규 직원 증가로 사업관리와 현장 지도력 약화

* 농정사업 담당자 동일 분야 보직 유지 기간 2.6년 → 2.3년

* 10년이상 경력직원 감소(45%→36), 3년이하 신규직원 증가(21%→25)

- ③ 농업분야 보조사업 담당인력의 승진 년수가 길고, 낮은 평가 등으로 사기가 낮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함

* 승진년수(9급→5급: 25년), 평가등급은 보통 이하 역량강화 횟수(37회/년→0.9)

국고보조금 전반에 관한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외, 2020)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위험성을 유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위험도에 따라 3단계(고위험·중위험·저위험)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부정수급 위험성 분류기준 마련을 위해 3차에 걸친 정책델파이 조사와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부정수급위험성을 높이는 특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둘째, 특성별로 중요도를 5점 척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정량화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조사업의 특성을 구조화 한 뒤,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특성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보조사업별 위험도를 계산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3단계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위험도에 따라 사업관리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차등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지 및 교육이다.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본인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공지하고 부정수급 관련 교육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집행 점검의 의무화이다. 보조사업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결산 검증의 강화이다.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발생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위험 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점검을 의무화하고, 중·저 위험 사업은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여 점검을 하는 것이다.

넷째, 정기적 감사 실시이다. 매년 정기적 감사사항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되, 고위험 사업은 매년 일정비율 추출하고 중위험 및 저위험 사업은 3년에 1회 정도로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5> 부정수급 위험도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 방안

보조사업 절 차	부정수급 관 리	내 용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위험도 평 가	○ 부정수급 위험도 체크리스트 평가 - 계속사업 : 보조사업연장평가 - 100억 이상 신규사업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100억 미만 신규사업 · 공모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비공모 :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토위원회
↓		
사업자 선정 후	공 지 및 교 육	○ 고위험사업 :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고위험 사업임을 공지 -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관리 지침 +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교육 실시 ○ 중위험·저위험 사업 :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 관리 지침 교육 실시
↓		
사업수행	집행점검	○ 고위험 사업 : 전수 집행점검 의무화 ○ 중·저위험 사업 :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출 하고 집행점검 실시
↓		
사업종료	결 산	○ 고위험사업 : 실적보고 시 부정수급 발생 여부 정밀점검 의무화 ○ 중·저위험사업 : 일정비율 표본을 추출하고 부정수급 발생여부 정밀점검 ○ 결산부분에서 부정수급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 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		
사후관리	감 사	○ 고위험사업 : 매년 일정비율로 표본을 추출 하여 정기적 감사 실시 ○ 중위험·저위험사업 : 3년에 1번 정도 표본 을 추출하여 감사 실시

출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외, 2020).

제3장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 주요 요인 개선 방향

제1절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요인 및 개선 방향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시행하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이나 관련 법령에 어긋나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발생하게 하는 주체는 최종보조사업자, 보조사업시행자, 중간보조사업자 등 다양하다.

이들이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시도하여 얻는 기대 이익이 부정수급에 적발될 때 부담하는 손해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거나,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설계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나 실행 용이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을 했을 때 기대 이익이 크거나, 부정수급을 쉽게 할수 있으면 부정수급이 증가할 것이다.

부정수급시 기대이익은 이익금, 제재와 적발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text{※ 부정수급의 기대 이익} &= [\text{성공 시 이익} \times \text{적발되지 않을 확률}] \\ &\quad - [\text{적발 시 제재} \times \text{적발될 확률}] \end{aligned}$$

첫째, 부정수급의 기대 이익을 낮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의 이익인 보조금액, 보조비율을 너무 높지 않게 하거나, 지급하는 형태를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보조보다는 현물이나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 형태로 할거나, 보조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조사업자 소유하는것 보다는 일시적 사용(임대, 사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조비율이 낮아서 보조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용처를 너무 좁게 한정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보조비율과 사용처 제한 범위는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으면 자부담 비율이 낮아 보조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신청하여 업체와 공모하여 구입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하여 거래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보조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한편 보조하는 물품을 사용 용도가 제한적인 물품으로 바꾸어 부정수급을 방지한 사례로 농업용 난방기 사용 면세유의 종류를 제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농업용 면세유를 지급할 때 용도에 따라 면세유 종류를 제한하는데, 시설재배에서 난방용 경유를 사용을 허용한 경우, 난방용 경유로 구입한 경유를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설난방용으로 면제받은 연료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부정수급이 많았으나,

겨울에 하우스 시설 난방용 기름에 면세 대상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등유로만 허용하였는데, 등유는 용도가 보일러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면세유 부정수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사례를 들 수 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여 실제로 농업용 시설에 난방을 성실하게 사용하던 농업인들은 등유로 전환하는 등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정수급 차단과 사업목적 달성, 보조사업자의 이익 증대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조사업자의 자격 기준 충족여부, 사업능력, 사업의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는 위원이나 담당자·상급자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격검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검증 수단이 제한된 경우,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불제나 대부분 농림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는 농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데, 농업의 각종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위탁하고서도 농지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각종 보조사업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현행화, 직불금 지급 자격검증시 빅데이터 검증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조사업 수행능력, 수행의지 등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이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부적정한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목적보다는 보조금을 타먹는 것이 목적인 자(cherry-picker) 이므로, 사업을 허술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외의 이익을 보려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의 기대이익을 낮추어서 부정수급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 적발되는 비율을 높이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상손해가 높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의 수배~수십배를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가 높더라도 적발율이 낮으면 부정수급 제대 강화의 효과는 거의 없다.

부정수급 적발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점검은 주로 담당공무원에 의한 행정적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하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발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담당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 분야와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낮아 회계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 부정수급을 적발할 확률이 낮다.

또한 증가하는 사업수와 민원 등 다른 업무에 점점 바빠지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사업점검 횟수나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적발했을 경우 환수, 제재조치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는데 비하여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사업담당자의 적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적발할 경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므로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거나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수급의 기대 이익을 낮추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적발 되었을 때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서 부정수급 적발시 기존의 환수 외에도 제제부가금을 부정수금액의 200~500%, 보조사업 지원 제한을 2~5년, 부정수급자의 내역과 명단공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였다.(2016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그럼에도 적발되는 비율이 턱없이 미미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부정수급이 적

발되어도 예전처럼 환수에 그치거나 제재수준이 낮은 위반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법 개정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위반 사유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하면 제재부가금 500%, 보조사업 참여제한 5년, 명단공표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정산보고 실수 등으로 보고 과오납으로 보아 환수만 하거나, 성실한 관리의 무 위반으로 보아 법령위반으로 판단하면 제재부가금 200%에 그치고 보조사업 참여제한이나 명단공표 제재는 받지 않는다.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 제재부가금 200%는 부정수급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므로, 다음에 또 부정수급 기회를 노리거나 관리를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표 2-6> 부정수급의 종류 (협회의 부정수급)

유 형	주 요 형 태 (예 시)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 허위 증빙자료로 가격, 수량 등을 속여 보조금 과다 수령 ○ 업체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대납하고 보조금 대리 수령 ○ 자격 미달자가 자격요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대상자로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시 심사 조작이나 부정으로 사업자 선정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사업비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 - 강사비·인건비를 운영비나 단체 행사비, 물품취득 등에 사용 - 영농정착지원금을 고급 명품 구입이나 유흥비로 사용 등
③ 법령, 교부결정내용 또는 처분을 위반	○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부당 지급, 정산 오류, 과다 지급 등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표 2-7> 부정수급 유형별.횟수별 제재 기준

유 형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1회	2회이상	3회 이상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5배 ③ 수행배제 5년 ④ 명단공표 1년	좌 동	좌 동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3배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3배 ③ 수행배제 3년 ④ 명단공표 1년	좌 동
③ 법령, 교부조건, 처분위반	보조사업자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2배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2배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2배 ③ 수행배제 2년 ④ 명단공표 1년
④ 지급요건 미충족	보조수령자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1배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1배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1배 ③ 수행배제 1년 ④ 명단공표 1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부정수급을 한 보조사업자의 법 감정이나 다른 형사법 위반의 제재 수준과는 너무 강한 처벌을 하면 처벌대상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재 수준이 낮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제재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최종 보조사업자

에게 지급한 시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을 반납받고, 추가적인 제재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표)는 중앙부처가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다.

지자체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 보조사업자가 주민이고, 선거권자이며, 오랫동안 각종 지원사업이나 정책, 생활 등을 통하여 안면을 익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의심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외부(감사원, 경찰조사, 고소고발, 신고,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조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적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업시행기관(시군, 공공기관 등)은 상위보조사업자(시도-중앙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위보조사업자는 사업평가, 차년도 보조사업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위에서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나 의심 되는 정황을 알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대상자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조사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발생사실에 대해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지, 부정수급이 확실한지를 오히려 확인하려 할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모른척 넘어가게 된다.

괜히 신고 했다가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게되면 신고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부정수급 환수액의 30%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지역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수급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조금관리법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하여,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의로 한 경우나 자진 신고한 경우 등에도 경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람에게 제재조치를 수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없다.

예를 들어 기준을 강하게 해놓고,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체감사 결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보고한 경우나, 의도·방법·금액·피해정도·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부정수급 제재 대상자도 경감해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처벌에도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의 기준에서 경감의 여지가 없을 경우, 수용하기보다는 각종 민원 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저항하게 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규정하였지만, 현장에서 일반 행정기관이 이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1억 사업을 자격이나 가격 등을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행정기관이 판단할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1억원을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부가금 500%(5억원), 5년간 보조사업 배제, 명단공표의 3중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일반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업법인의 경우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경감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해도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밝혀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법이나 제도, 행정적 조치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수급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넷째,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결정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조사업으로 기계장비나 시설, 물품, 용역,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대상물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조사업자와 업체가 공모하여 가격을 높게 거래한다고 해도 부정수급인지 시장거래에서 시장자유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

농기계의 경우 동일한 회사와 기종의 농기계를 지자체마다 구입하거나 보조해주는 기준 가격이 다르다.

보조해주는 비율이 같다면(정률보조) 가격을 높게 하여 보조금을 많이 지급받고, 업체가 보조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에게 돌려 주어도 업체와 보조사업자를 서로 이익을 볼 수 있고, 보조금은 과도하게 지급되는 셈이다.

농기계 기종별 시장가격의 기준이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조대상 농기계의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는 알수 없고, 보조사업자와 업체가 협의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 부정수급 의심이 간다해도 부정수급으로 조사하거나 처벌하기도 어렵다.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기계 용자지원을 위해 용자한도액을 정해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용자율을 알면 가격을 유추할수도 있어 지자체 등에서 보조사업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격 기준은 농기계업체가 정한 가격(권장가격)이므로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농기계보조 시 기준으로 참조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기준은 오히려 기준이 없는 경우보다 부정수급과 과도한 지급을 일으키기 쉽다.

보조되는 물품의 품질 기준에 대하여, 퇴비 비료의 경우 퇴비의 주요 품질의 최저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도

부숙도, 유기물 함량, 중금속 함량, 수분함량, 염분함량 등은 차이가 난다.

보조해주는 금액이 같을 경우(정액보조) 품질 기준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최저기준만 맞춘 퇴비비료를 공급하려 할 것이다. 품질기준이 없거나 측정할수 없는 항목은 검사할 방법과 기준이 없어 불량퇴비가 공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업인 교육의 경우에도, 1인당 지원비용,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품질은 교육수행기관의 노력이나 강사의 강의력, 프로그램운영 노하우 등에 따라 교육의 품질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농업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컨설팅 회사나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성실도, 컨설팅의 품질·성과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와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가 공모한다면 품질이 기준보다 낮은 서비스로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의 결과나 증빙자료를 가지고서는 이러한 거래가격이나 물품·서비스의 품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기준과 매뉴얼이 허술한 경우 부정수급은 일어나기 쉬우면서도 적발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비의도적 부정수급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의 가격,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비, 각종 용역서비스, 홍보 및 전시 행사, 현장 및 실습 교육, 컨설팅 등 지원사업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확인 방법을 설정하여 사전에 과도한 가격거래나 품질이 낮은 서비스의 제공을 예방하고, 사전 기준설정이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 여부를 심사하거나,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과다 청구 등의 문제 발생시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금법이 개정되어 부정수급 관련한 업체도 보조사업 참여 배제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조치하게 되어 있어 적기에 재제가 어렵고 폐업 등으로 실효적인 조치가 될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부정수급 관련 업체는 제재부가금이나 명단공표의 제재에는 제외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농업인, 중소 농업법인은 시장가격이나 품질정보, 행정력 등에서 거래업체보다 약하므로 업체가 주도하고 농업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래업체는 지역에서 보조사업자와 안면이 있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거래도 많이 하였을 것이므로 업체의 공모 제안에 농업인이 단호히 거절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농업 보조사업의 경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의 경영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하면 농업인이 시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자자체나 사업에서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로 지급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을 시행업체에게 바로 줄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받아 업체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업체가 주도하여 가격 부풀리거나 수량 속이기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조사업자나 보조사업 시행업체와 보조사업 담당자간의 유착 가능성이다.

보조사업자와 시행업체가 지역에서 기반을 가진 업체의 경우 다른 업무나 사업, 행사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시행업체로 계약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허술하게 검증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의 경우 상부 감독기관의 형식적인 행정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렵다. 외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조사 기관이나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부정수급의 시도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부정수급 원인은 보조금의 교부와 지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흐름을 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기 쉽다.

보조사업자의 신청 및 선정과정은 물론이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보조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고, 보조금이 어느 어느 부분에 지급되고, 최종 보조사업에 지급되고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반납되었는지 등을 흐름을 타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보조사업이나 유사한 보조사업의 경우 분야나 지원 물품별로 보조되는 금액에 대해 서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식량작물 공동체 지원을 위한 트랙터를 지원하는 경우와 축산 조사료 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트랙터를 지원하는 경우 트랙터를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서로 비교 해봤을 때 사양이나 가격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있는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나는지 등을 비교할 수 있어야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 흐름과 비교는 종이 서류나 담당자별로 가지고 있는 사업 관리 파일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사업과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모두 입력하게 하고, 그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이상한 점을 걸러 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e나라도움이라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까지의 보조금 집행 정보는 신뢰할만하지만, 그 이후 민간보조사업자와 시행업체까지의 보조금 입출 정보는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가장 중요하고 부정수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하위보조사업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부정수급을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징후를 추출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만으로 부정수급 시도는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최하위 단계까지 정보가 등록되고 현행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놓아도 최종사용자까지 정보입력이 안되면 무용지물이고, 불완전한 정보는 관리에 힘만 들뿐 대외적이나 관리용으로 활용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보조해주고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조자가 있어야 한다. 시스템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보조금 비효율집행 주요 요인 및 개선 방향

보조금은 국가에서 수혜적으로 민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수혜자가 많을수록 보조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부정수급을 막는 한편, 보조금을 목적에 적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수급을 막는 동시에 비효율적 집행을 최소화하는 것은 보조금의 수혜자를 확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은 목적과 규정을 명확히 벗어난 부정수급과는 달리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로 덜 목적에 덜 부합되고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이 덜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집행요소들이다.

보조금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알아보자

첫째,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면 효과가 높다.

보조금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적정한 규모까지 확장하

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면 그 효과를 더 크게 할 사람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충분히 있고 기술과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자는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잘 추진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자체적인 사업방향을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수정해야 하거나 보조사업 성과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자체 성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 대규모 경영체나 농업회사법인 등 자체경영이 중요한 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나 세제 혜택 등으로 사용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보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있고 사업을 하려는 의지와 비전이 있는 중소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일 것이다.

이들은 농업생산 및 경영의 확대와 다각화, 전문화에 필요한 농지, 시설, 장비 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능력(담보, 신용 등)이 부족하므로 규모나 범위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규모와 범위 확대,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이 가능하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므로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농이나 취업농의 경우 농업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내실있게 추진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의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유지를 위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정도의 보조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원해 주는 내용을 사업목적과 보조사업자의 요구에 잘 맞추어야 한다.

보조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맞아야 하며, 보조사업 신청자가 추진하는 방향과도 잘 맞아야 한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받아 사업을 하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중요한 주체는 국가와 민간보조사업자이다. 국가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만든다.

보조사업 시행지침은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범위를 정하는 것과 보조금을 정해진 범위에 맞게 쓰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이다.

반면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하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으며 보조금과 자부담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려 한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한다.

보조사업 시행지침은 여러 보조사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준과 지원 내용과 관리 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민간보조사업자의 상황과 요구에는 정확하게 맞기 힘들다.

따라서 개별 보조사업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정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침의 내용과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줘야 한다. 지침은 원칙일 뿐 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토양을 개량하는데 여러 가지 자재가 사용되는데, 정부는 대량생산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지원품목을 한정하고 있으나, 소량으로 제조하여 유통되는 제품도 동일한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지원해줘야 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이 목적이고, 보조를 받는 농업인도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소량 제조 자재를 사용하므로 사업목적에 적합하므로 지원을 해줘야 하나, 소량 다품목이 되면 사업추진의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침에서 정한 대량 생산·유통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행정편의성을 지나치게 우선한 행정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해 줄 때, 하우스 규격을 폭설이나 강풍에 견디도록 튼튼하게 설정하는데, 강설이나 강풍이 적은 지역이나 지형에 있는 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농가의 입장에서 예산과 자부담을 낭비하는 것이다.

규격이 강하면 설치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향후 노화 등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크므로 농가의 경영에는 부담이 된다.

한편 보조사업 추진시 중고 사용이나 자가 노동 투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조사업 목적과 보조사업자의 목적 달성과는 무관한 보조금관리 행정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보조금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라면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중고제품의 가격 평가나 자가노동의 투입 확인 방법을 정교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국가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보조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격과 범위를 과도하게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보조금이 오히려 낭비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비효율적 집행이 되기 쉽다.

이를 방지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현장이나 민간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지침을 만들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보조사업자와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간접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보조사업 지원 단계와 프로세스 최적화이다.

보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조사업 기획부서-사업부서-협업기관-시행기관의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친다.

보조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우 현장 확인 및 점검이 중요하므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행기관에게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확인, 정산, 부정수급관리 등을 위임하게 되고, 상위 보조사업자는 실적 취합, 지시사항 전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즉 보조사업의 추진 및 보조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상위보조사업자는 최종보조사업자를 중앙부처가 하는 것 만큼 신경써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성·현장성은 부족하다. 이 틈을 이용하여 부정수급과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고 그 정도는 평균 보조금의 20~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농업인들과 농정연구자 등은 추정하였다.(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외, 2021)

보조사업의 단계가 많을수록, 프로세스가 복잡할수록 보조사업의 목적의 전달력은 약해지고, 행정업무는 증가하고 관리감독력은 떨어지게 되고 된다.

농식품부는 주로 사업을 지자체, 민간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집행과 관리에는 거의 신경을 못쓴다. 지자체나 민간공공기관도 더 하위 기관(읍면동, 농협, 협회 등)으로 상당부분 위임하게 되어, 사업목

적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의지는 최종보조사업자에게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고, 최종보조사업자는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여 단순한 지원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추진 단계가 많은 사업들은 가능한 한 사업단계를 줄이고 각 단계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견제 내지 감독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사업추진 단계가 불가피하게 많은 경우 사업추진 관련자들끼리 모여 교육을 받고, 서로간의 문제점과 해결사례를 공유하고 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단순히 사업지침에 따라 정해진 내역을 보조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는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업추진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프로세스가 많을수록 최종보조사업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책목표 달성도가 떨어지고 최종보조사업자에게 가는 직접 혜택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물품을 농업인에게 공급해 줄 때, 납품회사가 직접 농업인에게 공급해주지 않고 농협이나 중간 센터 등 대행기관을 끼고 공급해주고 정산처리 등을 해줄 때,

보조사업자는 업체에 불만이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업체도 보조사업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덜 신경을 쓰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도 떨어진다.

보조금은 농업인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은 시행업체를 통해 지급되

고 농업인들의 자부담은 농협을 통한 판매대금이나 예금에서 차감을 통해서 빠져 나간다.

이렇게 중간 대행기관이나 업체를 추가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구와 일치도는 떨어지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될 보조금의 일부가 대행기관이나 업체의 수수료로 지급되므로 보조받는 금액이 액면가보다 실제가 낮아진다.

중간에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기관은 시행업체와 보조사업자에게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과도한 이익을 볼수 있다. 그럴수록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이중으로 보조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절차에 있어서 공모를 거쳐 여러 신청자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자료나 발표자료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용역회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용역에 대한 비용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유리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보다는 전시효과와 화려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치중하게 되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용역비 등 선정을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품질이나 양을 속이거나 보조사업

자가 자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어 보조 효과는 떨어질수 있다. 결국 사업이 부실하게 되어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정책의 성과는 달성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절차나 평가 등 을 복잡하게 하거나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인 평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과 사업신청자를 직접 실현가능성과 능력, 의지, 성과창출 가능성을 심사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설계할 때 집행과 정산의 효율성, 성과의 가시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권한을 주고 절차에 소요되는 중간비용을 줄이면서 직접 보조하고 보조받는 금액이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많은 사업의 경우 농협, 협회, 공공기관 등 중간대행자를 통해서 사업추진과 관리에 대한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 대행자도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정책 목표만 생각하여 추진하리라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다.

중간대행자가 보조사업을 스스로 효율화하거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많은 사업들이 중간대행기관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업무대행 기관 및 업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 정착·안정 및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행정적, 기술적, 경영적 지원이 중단되고,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에도 빠듯하므로 사실 완료 이후까지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지역 경제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해준 시설장비나 물품, 용역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보조받은 시설과 장비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점검도 필요하다.

다섯째, 보조사업의 실질적 품질 평가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입니다.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은 매년 재정사업 평가를 받고 있고, 보조사업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적정성, 집행실적 성과의 달성도이다.

사업의 적정성은 예산 편성시에 면밀하게 검토되므로 어느 정도 비슷하며, 사업의 집행실적은 주로 계획된 예산의 집행실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성과의 달성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이다.

문제는 사업의 사업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 평가를 객관적인 수치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집행실적은 예산의 집행율과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실적에 따라 평가되며, 성과 달성도는 측정이 가능한 투입이나 결과를 측정하는 수치 위주로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진정한 성과인 품질이나 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추진이나 품질과 관련성이 높은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지표는 극히 일부이다.

사업성과는 국회, 언론, 평가기관 등 외부에서 인정한 것만 인정하는데, 사회의 관심이 있는 분야만 성과를 인정받을 기회를 받을 뿐,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의 품질(성과)을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셈이다.

사업의 성과 지표 설정시, 사업의 목표 달성도는 측정하면서 성과의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성과의 달성도가 사업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배점이 크므로, 사업부서는 가능한 한 달성이 충분한 목표를 설정한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목표에 대해서는 높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평가위원들은 분야별 전문성이 낮으므로 사업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달성하기 쉬운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가 떨어진다. 목표 달성도가 100%만 넘으면 되므로, 목표만 넘기면 추가적인 보상이 없으므로 더 많이 하려는 의욕이 사라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집행율이나 성과의 달성도가 정책의 목표는 어느 정도 반영하나,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객입장에서 성과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획된 예산의 몇 %가 집행되었는지만 측정하므로, 직접 정책고객에게 효과를 주는 예산(실효예산)이 집행된 예산의 몇 %인지에 대한 측정이 없고, 성과가 직접 정책고객에게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지표가 없다.

일부 지표에서 정책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는 하나, 만족도를 조사할 때 내부에서 주관하여 외부용역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므로 조사대상 선정, 질문서 작성 등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교부된 예산이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가격부

풀리기,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하고, 그것을 뺀 나머지가 최종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경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공급과 관리, 정산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유기질 비료 공급 업체가 보조금을 감안한 농업인의 높아진 구매력에 맞추어 공급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의 집행은 표면적으로는 1,000억원이 집행되었지만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보는 예산은 농협의 수수료, 업체의 가격 인상분(보조없는 시중거래가격 대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신청을 위해 농업인들의 서류나 행정기관 방문 비용 등을 제외해야 하므로 실제 도움이 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진정한 보조사업에 직접 영향을 준 예산의 집행을 산출하여 사업의 재정적 지원 성과로 보아야 타당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물량을 시중가격으로 개인적으로 구입했을 때 가격으로 환산하여 시중거래 시 지원예산으로 환산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 예산 집행을 100%, 실집행을 : 98%

- 사업예산 : 1,000억원

- 집행액(부처→지자체) : 1,000억원,

- 실집행액(지자체→최종보조사업자) 980억원

(검토안) 예산 집행을 100%, 실집행을 : 98% **실효예산율 69.6%**

실효예산집행액 = 실집행액 - (수수료+농업인 행정비용+가격편차액+부대비용) = 980억원 - (58.8+19.6+196+9.8) = 980-284 = 696억원

* 보조용 퇴비 5,000원/포대(보조 2,000원/포), 시중 퇴비 4,000원/포, 농협의 대 농업인 공급 대행수수료 6%, 신청 및 정산 등 행정·금융 비용 2%, 부대비용 1%(있을 경우)

현재 예산 집행율과 실집행율을 따지고 있는데, 현장까지 도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의 액면 집행율과 실효적 집행율을 조사하여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추진 단계나 절차상 불가피하게 적정하게 책정된 비용을 제외하고 실효적 집행율을 산출할 필요도 있다.

다만 그러할 경우 불가피하지 않은 중간 예산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려 할 경우 실효적 집행율은 의미가 퇴색된다. 이 경우 법정 중간 비용만 인정하거나, 실효적 집행율 증가율을 지표로 삼으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부여가 필요하다.

현재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 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 점수에 따라 3가지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고, 기재부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절대평가로 85점 이상은 정상추진, 그 이하는 사업방식변경, 단계적 감축,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 등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우수 20%, 보통 65%, 미흡 15%로 구분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사업 전체예산의 1%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 등급이나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 사업담당자는 미흡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요 사업의 경우는 부서에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미흡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미흡이 되더라도 주요 국정과제 사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 사업의 경우도 미흡 15%안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리만 하면 가능하므로 사업을 더욱 잘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

다른 평가와는 달리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기본만 하면 된다는 방어적인 사업 추진을 초래하여 사업성과를 유인하지 못하므로, 평가에 들어간 각종 자료 작성, 평가 대응 등의 노력에 비해 소모적인 업무만 늘어나는 셈이다.

평가는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미흡에서 보통으로, 보통에서 우수로 평가를 잘 받으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 등급의 사업이나 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유인할만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평가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보조사업자의 정보, 지식, 경험을 확장하여야 사업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보조사업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보조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내기 어렵다.

시설하우스를 지원 받은 경우 하우스내 작물종류, 재배방법, 난방, 토양관리, 고온기 작물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수 있는데, 이때 분야별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

일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컨설팅사업이 부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소규모 사업을 하는 중소 농업경영체는 전문 지식과 정보력, 경험이 부족하여 컨설팅이 더 필요함에도 사업비 대비 컨설팅 비용의 효율성 때문에 컨설팅을 잘 받지 않으려 하고, 사업 지원내용에도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보조사업이 성공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영적 컨설팅이 적절히 지원되어야 한다.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조사업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보조사업 추진과 완료 후의 컨설팅을 위해 기존의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면서도,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중소기업의 경영지도사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기술적인 내용, 경영적인 내용, 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도와 주고,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4장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 최소화를 위한 개선 제안

제1절 보조금 관리 제도개선 제안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개선된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의 발생요인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과 핵심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행정력은 한계가 있고, 점검할 보조사업과 점검해야할 요소는 수없이 많다. 또한 사업시행부서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여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집중 점검, 중점점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행정점검을 실시하여 적발한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미흡하다.

일괄적인 점검에는 인력 등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임의 사업을 개략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경우 적발율이 떨어지고 개선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낮으므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는 사업별 위험도 평가 → 위험도 높은 사업 선정 → 위험 요소 선정 → 사업별 점검반 구성 → 서류 점검 → 현장점검 → 점검표 및 개선의견 작성 제출 → 개선 실시 → 개선결과 성과 평가 →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는 단계적으로 위험도에 영향이 큰 항목 우선 평가 → 영향이 보통인 항목 평가 → 영향이 적은 항목 평가 → 총 위험도 점수 산출 및 등급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사업 중에서 위험도가 큰 핵심요소(항목별 위험도 점수 참조)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면 점검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위험도 평가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하고 항목별 평가점수와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곱하여 위험도 점수를 산출하면 된다. 항목 및 배점, 중요도는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수 있을 것이다.

<표 2-8> 부정수급 위험도 산출 방법(예시 안)

유 형	구 분 (중분류)	평가 점수 (A)	중요도 (B)	점 수 (C=A× B)	위험도 $D = \frac{C}{\text{총점}} \times 100$
합 계		1~5	1~3		
기초 구조	예산 규모				
	재화 형태				
	최종보조사업자 수혜 크기 (수혜액, 보조율)	금액			
		비율			
집행,관 리 구 조	보조사업의 전달체계가 복잡한가?				
	최종보조사업 수행자 유형 및 관리체계				
	지원되는 재화의 가격, 품질, 수량 기준 및 확인체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교부, 집행, 산이 관리되어 투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인가?~				
관 역 및 력	보조사업 담당자(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전문성이 충분한가?	부처			
		자책			
	보조사업 담당자(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속(안정)적 관리가 가능한가?	부처			
		자책			
	보조사업 담당자(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가 관리하는 보조사업의 수가 적정한가?	부처			
		자책			
	보조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갖추었는가?	부처			
		자책			
	노력 및 결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부처			
		자책			
선 정 차 원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보조사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청·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부처			
		자책			
	보조사업자 신청자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조사업자의 공모, 심의 과정에 유의미한 경쟁이 있었는가?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사 후 관 리 및 지 원 체 계	보조사업 계획, 추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원활이 이루어지는가?				
	위험도 증가, 또는 관리강화 필요시 (위험점수 가점)				
특 이 사 양 (가감점)	위험도 감소 시 (위험점수 감점)				

보조사업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매년 실시하되, 보조사업 위험도가 저위험이거나, 사업구조 개선이나 역량강화, 노력도 향상 등으로 위험등급이 한 단계 하락한 경우에는 1~2년간 위험도 평가를 제외해주고 부정수급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주는 것을 인센티브로 제시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보조사업 지침을 총괄하여 점검하는 부서와 평가위원이 점검하여 불필요한 사업집행구조나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하여 발굴하고 개정을 사업부서에 권고하는 것이다.

사업부서는 한 분야의 정책의 목적을 최대화하려 하나,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거나 다른 사업과 충돌하는 등으로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경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현장 보조사업자는 혜택이 반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생각하여 사업부서에 권고해줄 필요가 있다.

유사 사업이나 패키지 사업을 묶어서, 상호 중복이나 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대상은 농업, 농촌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 농식품 관련 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기준은 기존의 능력과 사업 능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과도한 기본조건은 완화를 검토하고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조사업의 평가에 현장 성과 및 혜택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지도 및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컨설팅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전에는 사업신청서 검토 시 현장확인, 사업성 평가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 중에는 현장 중간 점검 및 기술이나 경영 지도를 지원하고, 사업 후에는 사업성과나 발전 가능성 평가, 보조금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나 시설, 용역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 전문가의 점검이나 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도 병행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제2절 보조금 관리 인프라 구축 제안

개선된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째, 보조금을 관리할수 있는 집중 관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종보조사업자까지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등록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등록 및 활용을 지원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현장과 부정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농식품 보조사업은 3단계 이상 보조사업이 많고, 최종보조사업자가 농업인으로 IT에 취약하고, 보조사업 현장이 분산되어 있어 e나라

도움 등록, 부정수급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관리를 강화하여 회계투명성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보조사업 관리단'을 구성·운영하여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나라도움 등록 및 사용을 제고를 위해 “농식품 보조사업 관리단”을 구성하고 특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e나라도움 등록 지원하거나 점검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관리단과 보조사업 현장 전문가로 부정수급 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현장 점검에 투입하여 적발률 및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사업 정보제공, 지침관리,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보조금관리단에서 수행하여 현장 맞춤형 보조사업 운영으로 부정수급, 비효율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야 하는데, 10억원 이하의 예산으로 잠재된 막대한 금액의 부정수급과 비효율 집행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요예산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예산은 범위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소요예산 추정) 보조금 집중 관리단 운영비 840백만원

○ 보조사업집중관리단 업무 대행기관 운영비 : **200백만원**

- 전담기관 인건비, 운영비, 교육, 출장비 등

○ 보조사업 관리단 활동비 : **490백만원**

- e나라도움 등록관리반 : 50명 × 8만원 × 100일 = 400백만원

- 부정수급점검반 : 20명 × 15만원 × 30일 = 90백만원

○ 농식품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지침 개선 : **150백만원**

- 정보제공, 시행지침서 및 보조금 관리규정 검토 및 개선 권고 위탁비 등

둘째,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관리, 부정수급이나 비효율집행 사례 및 예방, 담당자 간담회, 의견 교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 역량(전문성, 경험 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국고 낭비를 예방한 경우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지만, 부정수급을 적발하거나 비효율집행을 줄였다고 해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

현재 부정수급을 민간인이 신고하면 부정수금액의 30%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으며, 상한선이 없다. 20억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6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예산절감을 하면 예산절감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포상금을 준다.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국가예산의 환수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점검이나 인지활동을 통해 적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가점이나 경제적인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보조사업과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나라도움은 지자체 담당자와 최종보조사업자인 농업인 등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시스템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가 있

다. 그리고 정부 전체 보조사업에 맞추어 개발된 시스템이라서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및 보조금 관리, 부정수급·비효율집행 최소화를 위해 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기능들이 세밀하게 탑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마무리 하면, 보조사업 부정수급이나 비효율 집행에 관해서는 정권이 교체된 직후나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우 반짝하고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추진하다가 어느정도 지나면 슬그머니 예전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러는 사이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시스템이나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할 사업담당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직접관리가 중요한 부정수급과 비효율적 집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선 대책과 실행계획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보강이 어려우면 외부의 관리단을 만들어서라도 전담할 조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22년 12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민간보조금 점검 및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가 보조사업을 하는 모든 부처에 시달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이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부록] 보조사업 위험도 평가안

유형	구 분 (중분류)	배점 기준 (세부항목)	평가점수 (A)	중요도 (3 ² 1) (B)	종합점수 (C = A × B)	위험도 ($D = \frac{C}{50} \times 100$)
합 계						
기초 구조	예산 규모	○ 내역사업의 예산(국비) 규모 - 200억원 초과 : 5 - 100~200억원이상 : 4 - 50~100억원 이상 : 3 - 30~50억원이상 : 2 - 30억원 이하 : 1	5	3	15	
	재화 형태	○ 지원되는 재화의 형태 - 현금 계좌 직접 지급 : 5 - 현금성 다용도 쿠폰, 바우처 : 4 - 다용도 현물(보조사업외 용도 다양) : 3 - 특정용도(보조사업한정)의 현물 : 2 - 용역, 서비스 등 비재산 : 1	5	2	10	
	최 종 보 조 사 업자 수혜 크기 (수혜액, 보조 율)	○ 최종보조사업자 수혜액 - 1억원 초과 : 5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4 - 3천~5천만원이하 : 3 - 1천~3천만원이하 : 2 - 1천만원미만 : 1	5	2	10	
		○ 최종보조사업자 보조비율(국비·지방비) - 80초과~100% : 5 - 60초과~80%이하 : 4 - 40초과~60%이하 : 3 - 20초과~40%이하 : 2 - 20%이하 : 1	5	2	10	
집 행 ,	보 조 사 업 의 전 달 체 계 가	○ 집행관리 관계기관 수 - 5차 이상 : 5 / - 4차 : 4	5	3	15	

관리 구조	복잡한가?	- 3차 : 3 / - 2차 : 2 / - 1차 : 1 *농식품부(1차)→시·도(2차)→시·군(3차)→(협회, 공공기관, 농협)(4차)→민간보조사업(5차) **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조직 등으로 지원할 경우 조직당 1점씩 감점				
	최종보조사업 수행자 유형 및 관리체계	○ 최종단계 보조사업자 유형 - 민간개인보조사업자 : 5 - 민간(영리)법인보조사업자 : 4 - 협회, 비영리법인 등 단체 : 3 - 공공기관, 학교, 법정지정단체 : 2 - 자자체, 공공행정기관 : 1	5	3	15	
	지원되는 재화의 가격, 품질, 수량 기준 및 확인체계	○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재화의 가격, 품질, 수량 기준 및 확인체계(모두 합산) - 가격 기준 : 없음 1, 있음 0 - 품질 기준 : 없음 1, 있음 0 - 수량 기준 : 없음 1, 있음 0 - 가격 적정성 검증 체계 : 없음 1, 있음 0 - 품질 적정성 검증 체계 : 없음 1, 있음 0 - 수량 적정성 검증 체계 : 없음 1, 있음 0	5	3	15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교부, 집행, 정산이 관리되어 투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인가?~	○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관리 - 교부만 e나라도움 이용(비예치) : 5 - 집행 일부 가상계좌를 통한 직접 지출(혼합형지출) : 4 - 가상계좌를 통한 변칙적 지출(예치형-변칙*) : 3 - 가상계좌를 통한 정상적 지출(예치형-정상**) : 2 - 가상계좌를 통한 정상적 지출(예치형-정상), 부정징후 모니터링 현장 점검 기록 : 1 * (예치형-변칙)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에서 보조사업자의 계좌로 지급된 후 사업시행자의 별도 계좌로 송금됨 ** (예치형-정상)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에서 사업시행자의 계좌로 송금됨	5	2	10	
	추진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는가?	- 보조금 가내시(보조사업자 예비결정) - 확정 내시(보조사업자 확정) - 사업지침서 확정 통보(사업개시)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3월, 6월) - 보조금 1차 교부(1분기, 상반기, - 보조금 최종 교부(12월 집중여부)				
관리 역량 및 노력	보조사업 담당자(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전문성이 충분한가?	○(주무부처) 보조사업 담당 기간 - 1년 이하 : 5 - 1초과~3년이하 : 4 - 3초과~5년이하 : 3 - 5초과~7년이하 : 2 - 7년 초과 : 1 * 농업분야 전공, 농업자격증 보유, 보조사업 교육이수(15시간이상)시 1점 감점	5	2	10	
		○(시행기관) 보조사업 담당 기간 - 1년 이하 : 5 - 1초과~3년이하 : 4 - 3초과~5년이하 : 3 - 5초과~7년이하 : 2 - 7년 초과 : 1 * 농업분야 전공, 농업자격증 보유, 보조사업 교육이수(15시간이상)시 1점 감점	5	2	10	
	보조사업 담당자(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속(안정)적 관리가 가능한가?	○(주무부처) 동일사업 담당 기간 - 6개월 이하 : 5 - 6개월초과 ~ 1년이하 : 4 - 1년 ~ 2년 : 3 - 2년 ~ 3년 : 2 - 3년 이상 : 1	5	2	10	
		○(시행기관) 동일사업 담당 기간 - 6개월 이하 : 5 - 6개월초과 ~ 1년이하 : 4 - 1년 ~ 2년 : 3 - 2년 ~ 3년 : 2 - 3년 이상 : 1	5	2	10	
	보조사업 담당자(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가 관리하는 보조사업의 수가 적정 한가?	○(중앙부처) 담당자 관리 사업수(내역사업) - 5개 이상 : 5 - 4개 : 4 - 3개 : 3 - 2개 : 2 - 1개 : 1 * 세부사업관리자일 경우 +1 (한도 5) * 하위 1~2차 보조사업자수가 30개이상이면 +1(한도 5)	5	2	10	

	○(시행기관) 담당자 관리 사업수(내역사업) - 11개이상 : 5 - 8~10개 : 4 - 5~7개 : 3 - 2~4개 : 2 - 1개 : 1 * 최종보조사업자수가 20개이상이면 +1	5	2	10	
보조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갖추었는가?	○(중앙부처) 보조사업 관리 조직·인력 - 전담 조직, 인력 없음 : 5 - 전담인력 있으나 업무가 50%이하 : 4 - 총괄조직과 전담인력 있음(50%이하) : 3 - 총괄조직과 전담인력 있음(50%이상) : 2 - 독립된 총괄조직과 전담*인력 있음 : 1	5	2	10	
	○(시행기관) 보조사업 관리 조직·인력 - 전담 조직, 인력 없음 : 5 - 전담인력 있으나 업무가 50%이하 : 4 - 총괄조직과 전담인력 있음(50%이하) : 3 - 총괄조직과 전담인력 있음(50%이상) : 2 - 독립된 총괄조직과 전담*인력 있음 : 1	5	2	10	
노력 및 결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중앙부처) 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실적에 대한 보상 - 적극행정에 준하는 보상 : 5 - 장관상, 등				
	○(시행기관) 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실적에 대한 보상 - 적극행정에 준하는 보상 : 5 - 장관상, 등				
보조사업 점검에 충분한 노력을 하는가?	○(중앙부처) 보조사업 점검 의견수렴 (전년) - 현장점검 0회, 서류점검 1회, 간담회 0회 : 5 - 현장점검 1회, 서류점검 2회, 간담회 1회 : 4 - 현장점검 2회, 서류점검 3~4회, 간담회 1회 : 3 - 현장점검 3회, 서류점검 4회 이상, 간담회 1회 : 2 - 현장점검 4회 이상, 서류점검 4회 이상, 간담회	5	3	15	

선정차원		2회이상: 1				
		○(시행기관) 보조사업 점검 의견수렴(전년) - 현장점검 0회, 서류점검 1회, 간담회 0회 : 5 - 현장점검 1회, 서류점검 2회, 간담회 1회 : 4 - 현장점검 2회, 서류점검 3~4회, 간담회 1회 : 3 - 현장점검 3회, 서류점검 4회 이상, 간담회 1회 : 2 - 현장점검 4회 이상, 서류점검 4회 이상, 간담회 2회 이상: 1	5	3	15	
		○(중앙부처) 보조사업 점검 적발건수(전년) - 주의, 시정 1건 : 5 - 주의, 시정 2건 : 4 - 주의, 시정 3건 : 3 - 주의, 시정 4건 : 2 - 주의, 시정 5건 이상 또는 환수 1건 이상 : 1	5	3	15	
	보조사업 문제점과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적발실적이 있는가?	○(시행기관) 보조사업 점검 적발건수(전년) - 주의, 시정 1건 : 5 - 주의, 시정 2건 : 4 - 주의, 시정 3건 : 3 - 주의, 시정 4건 : 2 - 주의, 시정 5 이상 또는 환수 1건 이상 : 1	5	3	15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보조사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청·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중앙부처) 보조사업 정보 제공 - 공문, 이통장 자료로만 제공 : 5 - 홈페이지 게시 또는 책자·홍보물 배포 : 4 - 홈페이지 게시하고 책자·홍보물 배포 : 3 - 통합정보제공시스템(Agris)에 제공 : 2 - 통합정보제공시스템(Agris), 홈페이지 게시, 책자·홍보물 배포 : 1	5	2	10	
		○(시행기관) 보조사업 정보 제공 - 공문, 이통장 자료로만 제공 : 5 - 홈페이지 게시 또는 책자·홍보물 배포 : 4 - 홈페이지 게시하고 책자·홍보물 배포 : 3 - 통합정보제공시스템(Agris)에 제공 : 2 - 통합정보제공시스템(Agris), 홈페이지 게시, 책자·홍보물 배포 : 1	5	3	15	
	보조사업자 신청자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조사업 신청자 자격 적격성 검증 - 담당자가 신청서 구비 서류로 확인 : 5 -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조사로 확인 : 4 - 검증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 3	5	3	15	

		- 검증시스템 확인 후 일부* 현장 확인 : 2 * 데이터 불일치 의심자 및 랜덤 추출 - 검증시스템 확인 및 현장 전수확인 : 1				
	보조사업자의 공모, 심의 과 정에 유의미 한 경쟁이 있 었는가?	○ 공모 없이 동일한 보조사업자 지정 : 5 * 법령으로 지정된 경우는 3점 ○ 공모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내부검토하여 최근 5년 동일한 보조사업자 선정 : 4 ○ 공모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3년 동일한 보조사업자 선정 : 3 ○ 공모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서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2 ○ 공모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서류 심의와 현장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1	5	3	15	
사후 관리 및 지원 체계	보조사업 완 료 후 사후관 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 지는가?	○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미이행 : 1 ○ 중요재산 공시 안함 : 1 ○ 중요재산 합목적 사용 매년 점검 안함 : 1 ○ 보조사업자 사후 기술·경영 지도 없음 : 1	5	1	5	
	보조사업 계 획, 추진, 성 공적 안착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가 갖추어져 있고, 원활이 이루어지는 가?	○ 전문가나 전문업체 지원 시스템이 있음 ○ 전문가의 사전 지원 시스템이 있음 ○ 전문가의 사전, 사후 지원 시스템이 있음 ○ 전문가가 계획~사후 까지 전단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 ○ 전문가가 계획~사후 까지 전단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	5	2	10	
특이 사양 (가 감점)	위험도 증가, 또는 관리강 화 필요시 (위험점수 가점)	○ 국회단계나 추경 반영 사업 : 5 ○ 신규사업 : 3 ○ 기타 사업의 특성변경, 관리상태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3 ~ 5점	10	2	20	
	위험도 감소 시 (위험점수 감점)	○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개선하여 위험도를 감소 시켰는가? - 감소시킨 만큼 추가 감점 ○ 기타 특성변경, 관리상태, 역량강화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3 ~ 5점	10	2	20	